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2014. 6.

- 본 가이드라인은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협회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28③~④)의 해석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회원사 내부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2.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반영 사항"은 조사분석 업무 관련 내부규정 또는 업무매뉴얼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조사분석업무 담당 부서의 정보교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서는 협회 규정 이외에 금융감독원의 관련 모범규준(요약내용 참고)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분석자료 주된 내용의 정의

-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란 투자등급, 목표가격, 실적 전망치 및 기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와 관련 논평·분석을 의미

\* 신규 상품·서비스, 투자계획, 주요 거래상대방 변경, 재무상태 변화 등

- 특정 사항이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회사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정보가 미공개 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된 내용 판단과는 관계없음

\* 다만,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 논평·분석이 없는 단순 공개정보는 주된 내용에서 제외함

- 다만, 기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이 아닌 사항\* 등은 향후 공표될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2호라목)

### (참고)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경우(예시)’

#### ① 금융투자회사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사항\*

- 실적 등 전망치 : 해당 실적 등 전망치(ex: 순이익 예측치)가 종전 조사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크게(ex: 10% 내외) 달라지지 않고, 향후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에서 기존 투자등급·목표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 그 외 기타 정보 : 해당 정보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공표되는 조사 분석자료의 투자등급·목표가격 및 실적 등 전망치 등이 종전 조사 분석자료와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p335, 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 참조

#### ② 단순 공개정보

- 대상 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정보로서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 논평·분석이 없는 경우
  - \* 대상 법인의 의사로 공개하기 전 신문 등으로 추측 보도된 내용 등은 공개된 정보가 아님(대법원 선고000도2827)

## 2

##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반영 사항

- (제공대상) 제공시 제공내용 및 제공대상을 사전에 특정하고, 2차 제공은 금지(외부 제공시는 2차 제공 금지를 요구)

< 조사분석자료(주된 내용 포함) 사전 제공대상 분류>

제공대상		허용 여부	비고
내부	영업 담당 임직원	X	조사분석자료 제공시 사전 제공 금지 위반 외 '공표'에 해당할 수 있음 (영업 및 업무규정 §2-25 4, §2-28④)
	기타 작성·심의 미관여 임직원	X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④
외부	조사분석 대상 기업	X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④
	기타 제3자 (개인 및 법인)	○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준수 필요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③)

- (제공수단) 제공수단은 회사가 관리 가능한 사내 전화·메일  
·메신저 등으로 제한
- (기록관리 등) 제공사실 및 제공시점을 전산관리하여 자료  
공표시 해당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제공내역을 일정 기간  
(ex: 3년) 이상 보관 의무화
- (매매등 제한) 사전 제공시 해당 정보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까지 매매 등에 이용하지 않도록 제공 상대방에게 안내  
해야 함(영업 및 업무규정 §2-31①)

## 3

## 조사분석업무 담당 부서의 정보교류 내부통제

- (기업금융) 기업금융업무 부서와 협의시 자료교환은 준법  
감시부서를 통해야 하고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입회<sup>\*</sup>해야 하며,  
회의 주요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녹음 후 제출

- 다만, 조사분석 대상 법인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투자등급 또는 목표가격 변경 등)은 협의 금지(영업 및 업무규정 §2-28⑤)

#### **'[참고] 정보교류 내부통제 관련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요약)'**

- (통신수단)** 애널리스트 등 조사분석업무 담당부서 임직원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내 공용 메일·메신저(이하 ‘메신저 등’이라 한다) 사용을 의무화하되,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외부 메신저 등 사용을 허용하고, 임직원의 메신저 등 사용내역 저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 ‘애널리스트의 메일·메신저 사용’)
- (모니터링)** 준법감시인은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협의가 있는 임직원의 메신저 등에 대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해야 함
  - 모니터링 대상 임직원의 선정방법 및 모니터링 방법\* 등은 준법감시인이 정함(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0조)
- \* 모니터링 주기(ex:분기별), 모니터링 대상 정보통신수단 등
- (내부통제)** 메신저 등 사용내역의 저장 및 모니터링에 대한 임직원의 사전 동의 등 내부통제 절차는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4장’에 따름

\* 세부사항은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금투사-00066, ’08.12)’,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11.3.)’ 참조

## [별첨]

#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관련 사례(Q&A)

1

## 제공 시점

Q1. 기제공한 정보가 제공 당시에는 중요 정보가 아니었으나, 시장·기업 환경 등의 변화 등에 따라 향후 공표될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제공 규제가 적용되는지?

A1. 주된 내용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제공시점이며, 제공 후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해당 정보가 주된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사전 제공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단시점 당시 주된 내용이 아닌 정보의 제공은 사전 제공 규제 대상이 아니나, 향후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에 제공사실 및 제공시점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 공표 후 제공

Q2. 향후 공표될 조사분석자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기업 관련 중요 정보 등)을 자료 입수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이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경우 사전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A2. 해당 정보가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된 내용일 경우에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사전 제공 기준에 따라 제공하거나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제공해야 합니다.

**3****제공 후 미공표**

Q3. 조사분석 대상 법인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사전 제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A3. 조사분석 대상 법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 정보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기공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주된 내용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조사분석자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협회 규정상 금융투자회사·금융투자분석사의 선관의무 위반 또는 공정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공표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영업및업무규정 제2-26조제1항, 제4항).

**4****단순 공개정보**

Q4.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에서 제외되는 단순 공개정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기기간이 경과한 것을 의미하는지?

Q4. 원칙적으로 경과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투자분석사 등이 조사분석 대상 법인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금융위·거래소 공시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 직후부터 제공이 가능합니다.

Q5.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 스케줄을 법인영업부서 및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전 제공에 해당하는지?

A5. 기업탐방 스케줄 제공 자체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사분석자료가 잘 발간되지 않는 중소 상장사 등의 경우(ex: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 2회 이하 발간 기업 등)에는 기업탐방 스케줄을 매수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Q6. 기업탐방시 법인영업부서 및 기관투자자를 동반하여 방문하고, IR 담당자로부터 같이 취득한 정보를 조사분석자료로 공표하는 것이 동반한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사전 제공에 해당하는지?

A6. 애널리스트가 아닌 IR담당자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애널리스트가 사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공표전 관련 정보에 대한 논평이나 분석을 별도로 기관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주된 내용인 경우 사전 제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IR 담당자가 제공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기관투자자 등이 매매에 활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제공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조사분석자료 및 그 주된 내용의 사전제공을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도 사전 제공 관련 내부 기준을 제정해야 하는지?

A7. 사전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부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표전 조사분석자료 및 그 주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리서치부서가 제공하는 자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교류에 대한 내부 통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

###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b>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b>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생 략)</li><li>2. 법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li><li>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li><li>다.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li><li>라.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li></ol></li></ol>
영업 및 업무규정
<b>제2-26조(조사분석의 원칙)</b>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공정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b>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b> ① (생 략)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영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1.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2.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 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